

## 발표 4

# 가족과 노인부양의식 - 일본과 한국의 비교연구 -

조 추 용\*

## I. 서 론

사회복지와 가족관계는 그 존재유무와 역할, 기능, 구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가복지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날 재가복지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공적인 지원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가족이다. 또 앞으로 가족의 형태나 기능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복지에서 기대되는 가족의 기능과 역할은 정서적 지원/부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부모와 자녀의 동거율이 대단히 높은데 이는 재가복지를 논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교사회의 특징으로서 주로 노인과 자녀가 동거하면서 부양해 왔는데 앞으로는 노후의 경제적 보장이 공적연금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정서적 부양에 대해서는 가족의 기대가 높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도시화·핵가족화에 의한 부모와 자녀의 동거율이 떨어지고 부모의 부양의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주로 개호의 담당자인 여성의 사회진출과 주택사정, 노인부양의식 등의 사회적 환경변화는 부모와의 동거를 더욱 곤란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초점을 두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는 가운데 동양적 사고를 사회적 배경으로 깔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진출과 노인의 부양의식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가족과 노인부양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앞으로 저의

---

\* 현도꽃동네사회복지대 교수

연구과제로 삼겠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부장제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고,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며, 산업사회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기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족의 형태는 어떠한 변화를 하여 왔는가?

둘째, 여성의 사회진출(참가)과 전통적으로 여성의 개호에 의해서 수행되어온 노인의 개호를 앞으로 누가 담당하여야 하는가?

셋째, 노인의 부양형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한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할 것인가? 변화하고 있는 노인부양의식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였는가? 등이다.

## II. 노인과 가족

### 1. 가족의 개념과 가부장제

긴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족은 주로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으로서 형성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은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특히 재가복지자를 추진할 때 정서적 원조기능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중요하다. 또 가족은 원초적인 집단이고 1차적 집단<sup>1)</sup>이다. 그리고 보호·보건 등 신체적 보호의 1차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개인에 있어서는 사회화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가족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면 가족이란 ①그 집단구성원이 혼인 또는 혈연관계(擬制的 혈연관계를 포함)에 의해서 맺어지고 ②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기능으로서는 노동주체인 인간의 생명과 생활의 재생산, 새로운 노동주체의 세대적 재생산이 기대되고 ③그 일상적 생활형태로서는 통상 주거·식사·가계를 함께 하는 생활의 상호보장을 갖는 특징이 있고 ④인간관계로서는 성애(性愛), 모성애, 부성애, 육친애 등 애정의 결합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적 공동사회의 기초적 단위이다(北川隆吉, 1984: 405). 이가라시(五十嵐忠孝)에 의하면 가족이란 부부관계 및 친자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집단이다. 요컨대 共食, 거주의 공동, 경제적 협력 등을 그

1) 집단에는 情과 감정에 의해서 결속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1차적 집단 혹은 원초집단과,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으로 감정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2차적 집단이 있다. 또 이것을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와 게젤샤프트(Gesellschaft)로 나누기도 한다.

특징으로 한다(仲村優一, 1990: 94). 가족의 기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속하고 있는 가족의 보편성과 그 가운데 각각이 맡은 역할·협력관계, 말하자면 경제·보건·보호·애정 등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접촉 관계에서 성립한다. 가족의 구성은 부부관계를 축으로 거기서 파생하는 친자·형제관계의 소수 집단이다. 모리오카와 모치즈키(森岡清美·望月嵩, 1992: 3)에 의하면 가족이란 부부·친자·형제 등 소수의 근친자를 주요 성원으로 하며 성원상호간이 깊은 감정으로 맺어진 제1차적 복지추구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 관해서 살펴보면 가족을 혼인에 의해 맺어진 부부와 혈연관계에 의한 친자, 형제의 관계를 제일차적 관계(北川隆吉, 1984: 413)라고 한다. 이 개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재가에서 개호를 실시하는 배우자, 며느리, 딸 중에서 배우자는 가족이지만 며느리, 혼인한 딸에 의한 개호는 이미 친족개호에 해당한다. 또 친족의 범위는 혈연과 혼인을 매개로 한 인연으로 맺어진 인간 및 그 집합체를 친족이라고 부르고 그 관계를 친족관계라 부른다(北川隆吉, 1984: 412). 민법에서는 일본의 경우 6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부계 8촌 이내, 모계 4촌 이내까지가 친족의 범위이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은 유교사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폭이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오늘날 가족의 범위는 거의가 세대(世帶)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과 세대에 관해서 모리오카와 모치즈키(森岡清美·望月嵩, 1992: 6)에 의하면 국민생활의 사실상의 단위로서 소비단위인 소대(所帶)에 주목해서 실시한 조사와, 구빈을 위한 행정용어로서 1918년 “국세조사시행령”에서 처음으로 “세대”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조사대상의 단위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급에 있어서는 세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전통적 사회에서 노인의 지위와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가부장제도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가부장가족제도는 ①부부와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아니고 조부모, 부모, 장남부부, 장손부부 등 소위 제사상속자(祭祀相續者)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형태적 측면의 가부장 가족이다. ②가정에서는 가장 윗세대의 부계남자가 그 통제권인 가부장권을 행사한다. ③친자관계가 다른 가족관계보다 중요시되고 그 관계는 권위·예속관계이다. ④재산은 장자상속제(최재석, 1986: 37-8)라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명치민법에 나오는 호주권(가부장권)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면 ①그 가문의 성(氏)을 칭하는 권리 ②거주지정권 및 이것에 따른 이적권(離籍權) ③가문의 입적권, 가족 또는 가문에 대한 동의권 ④가족의 혼인 또는 양자입양에 대한 동의권과 이것에 따른 이적거절권 ⑤가족의 혼인 또는 양자입양을 취소할 권리 ⑥가족이 된 양자가 양친의 사망후 별연(別緣)할 경우의 동의권 ⑦가족의 금치산, 준금치산에 관한 권리 ⑧가족의 후견인 또는 보증인이 될 권리의무 ⑨친족 회에 관한 권리 등이다. 한편 이러한 가부장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가 주어지는 대신 부양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布施晶子·玉水俊哲, 1982: 11).

당시 가부장의 권한은 광범위하고 강대한 것이었으며, 노인의 위치는 절대적이며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절대주의적 천황체제하의 사회저변을 지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가족제도(家制度)의 해체는 국민의 생활을 지탱한 이데올로기의 붕괴라는 점에서 본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1945년 후 일본사회가 가족에 대한 사고방식은 첫째로 민법,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개혁이 어떠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이 사회에 어떻게 정착해 가는가가 문제된다. 신민법(新民法)은 가산과 가업의 계승을 기초로 다음 세대에 걸쳐서 존속하는 세대가문(世代家族)의 존재를 부정하고, 한 쌍의 남녀가 결혼으로 성립된 삶이 쌍방의 죽음에 의해 소멸하는 일대가족(一代家族)을 새로운 일본의 가족이라고 규정하였다. 장자 단독의 단독상속(家獨相續)에 대신해서 균등상속(均分相續)이 등장하여 가부장권은 부정되고 민주적으로 평등한 인간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布施晶子·玉水俊哲, 1982: 22).

한국의 경우 1979년 민법 제1009조는 지금까지 가계계승자이고 제사의 집행자이기도 한 장남을 대신하여 새롭게 균등상속법이 정해졌다. 그 균등상속에 의해서 장남의 지위가 떨어짐과 동시에 가계계승자의 권위도 없어졌다. 소위 “차등으로부터 평등으로” 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함과 함께 노후부양을 맡긴 노인과, 또 가족구조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에 의해서 전통적인 친자관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도시화, 산업화와 맞물려 노인의 사회적 부양론이 대두된다.

## 2. 가족의 기능

도시화, 산업화에 의하여 붕괴되고 있는 가족기능의 중요성이 오늘날 강조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그 배경과 특징 등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미 말했듯이 일본의 1945년 이전은 가족제도(家制度) 하에서 장자상속과 동시에 노인의 부양이 당연한 것으로서 의무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1945년 이 후에 가족제도가 폐지되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승인되어 온 장자상속=노친부양의 등식이 변화하게 되어 부모와 기혼자녀와의 생활결합은 점점 분리된다. 뿐만 아니라 가계를 계승하는 자녀(주로 장남)가 직업과의 관계와 도시생활에서의 주택사정 등의 이유로 부모와 동거가 곤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73년 이후 경제적으로 저성장하의 강축척(強蓄積)이라는 새로운 단계에서 가족기능의 자조기능 발휘에 다시 사회적으로 강한 기대를 걸게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노인과 자녀에게 복지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가족성원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전면적으로 복지기능을 떠맡길 대상의 요청이 강해졌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부, 자민당에 의한 “가정기반 충실정책”과 그것을 토대로 하는 “일본형 복지사회구상”, 그 기본방침에 바탕을 둔 예산조치가 책정되었다. 어떻든 이 단계에서 새로운 복지의 담당자로서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布施晶子·玉水俊哲, 1982: 7). 한편으로는 1993년 5월 중의원(衆議員, 일본의 하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소토구치(外口玉子, 사회당)는 장애노인의 개호와 가족문제를 정부측에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지금과 같이 가족에게 의존한 채로 고령사회를 잘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정부측의 후생성 노인보건복지국장 요코오(横尾)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들의 고령자 보건복지추진10개년전략 사상은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가족에 의한 개호를 전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해도 공적인 개호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용할 것입니다’. 국정을 토론하는 장소에서 장애를 가진 노인의 개호는 가족만의 사적책임이 아니라는 명확한 인식을 한 발언이었다(岡本祐三, 1994: 156).

그러한 가운데 복지의 원조기능과 담당자로서 무너지고 있는 가족의 기능을 “일본형 복지사회”와 “제2임조(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활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평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현실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주택, 전근 등의 사회적 환경의内外적 요인에 의해서 가족성원에 의한 사적부양은 곤란한 요소가 많다.

한편 한국은 조선시대에 흘러들어 온 유교사상이 아직도 뿌리 깊게 전통으로 남아 있다. 유교사상이란 삼강오륜의 윤리규정으로 상징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관계를 사회적 질서로서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질서와 역할이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유교사회는 남성우위의 사회이고 연장자 우선이며 사망자에 대해서도 제사를 통해서 존경되는 사회이다. 또 전통적 가족의식이 뿌리 깊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문의 계승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남자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상(異狀)한 남아선호사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남녀의 성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과거에 유아사망률이 여아에 비교하여 남아가 높았는데 공중위생의 발달에 의해서 남아의 유아사망률이 낮아지게 되고 남아의 선택출산에 의해 최근에 남녀의 성비가 상당히 무너져 있다. 1998년 전체 인구의 성비를 보면 여자 100에 대해 남자가 101.6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0-4세는 114.6이며, 5-9세는 113.7(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67)로 되어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유교사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국에서도 도시화·산업화에 의하여 가족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복지기능을 대부분 가족에 맡기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복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보호한다고 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한국의 생활보호제도는 논할 필요도 없고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법 등의 법

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주된 논점은 구미의 복지정책을 과탄한 모델로 규정하고 한국의 미덕인 가족기능의 특징을 살린다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1980년을 전후로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복지삭감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전개는 “일본형 복지사회”的 영향도 크다고 생각한다.

### 3. 가족형태의 변화

가족형태의 변화는 가족성원이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의 가족규모의 측면과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의 가족구성면에서 논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는 노인과 자녀의 동거상황을 논하고자 한다.

가계계승과 조상승배로 인하여 전통적인 직계가족·확대가족의 형태를 띠었던 한국사회에서도 경제발전과 함께 핵가족화·소인수화가 진행되고 있다.

옛날 집약농경사회에서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가족은 중요한 경제적 단위이다. ②친족결속의 강화라는 특성을 가진다. ③친족의 지연(地緣)집단화 현상이다(이광규, 1986: 55). 거기에는 가족이 노동력의 확보·유지와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는 동족의 마을을 형성한다. 또 거기에는 연공서열의 규칙이 생겨 연장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형성된다. 여기에 반해 현대가족은 ①대가족제도가 도시화·산업화, 그리고 정부주도의 인구정책에 의하여 소인수가족이 된다. ②도시화에 의한 주택문제와 농촌에서 이주해 온 젊은이가 핵가족을 형성한다. ③직장과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하여 이웃과의 교류가 적어지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가족계획에 관해서 살펴보면 한국은 1930년대 까지 전형적인 전근대적 형태인 다산다사의 인구형태였다. 그러나 그 후 의료기술의 발달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의한 충분한 영양섭취 등의 영향으로 인구형태가 다산소사형으로 변화하여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그래서 정부는 1960년에 인구억제(산아제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의 외곽단체로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발족되어 처음에는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슬로건을 내세우다가 그 후 ‘둘도 많다 한 명만 낳자’는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기혼여성의 평균출산아가 1960년에 6.0명에서 1990년에는 1.6명까지 줄어들었으나 1996년 현재는 1.71명으로 늘었다. 또한 기존의 인구억제정책 중 1995년 현재 ① 공무원 수당지급제한 ②의료보험의 분만급여제한 ③불임수술자에 대한 주택공급상의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시책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 인구억제정책 중에 피임기구 및 피임시술의 무료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 이용을 위해서 가족형태는 대가족제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가족제도하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였기 때문에 노인부양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농경사회의 대가족제에 대해서 이완재는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우대받고 안락한 노후를 향유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경로효친의 윤리와 규범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박재간, 1985: 55). 더욱이 노인의 풍부한 경험이 가족의 일상생활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 경험은 절대적 이였기 때문에 노인의 가치는 컼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족형태가 크게 변하여 평균세대원수도 감소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일본과 한국의 가족구성 및 평균세대원수의 비교이다.

<표 1> 일본과 한국의 가족구성 및 평균세대원수

국 가	연도	총세대수 (1000)	핵가족(%)		3세대 이상 (%)	단독세대 (%)	평균세대 구성원(명)
			부부만	미혼자녀와 부모			
일 본	1960	22,231	7.4	45.8	30.6	16.2	4.54
	1970	30,297	9.9	47.0	22.7	20.4	3.69
	1980	35,824	12.5	47.7	19.8	19.8	3.28
	1985	37,980	13.8	46.4	19.0	20.8	3.22
	1990	40,670	15.5	44.1	17.2	23.1	3.05
한 국	1960	4,371	7.5	64.0	28.5	-	5.7
	1970	5,576	6.8	70.0	23.2	-	5.2
	1980	7,969	8.3	68.5	17.0	6.3	4.5
	1985	9,571	9.6	67.0	14.8	8.6	4.1
	1990	11,355	10.7	66.3	12.5	9.0	3.8

자료: 三浦文夫(編), 「圖說高齡者白書」,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3, p.40,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 연도

우선 가족의 구성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의 핵가족화는 1960년 53.2%, 80년 60.4%였던 것이 90년에는 59.6%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핵가족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3세대 이상의 가족은 축소경향에 있다는 것이다. 또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부세대와 단독세대의 비율이다. 이 세대들은 거의가 독신세대 또는 노인세대인데, 노인세대는 앞으로 노인복지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또 1992년 노인가족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단독세대가 15.7%, 노인부부세대가 22.8%, 3세대가 36.6% 등이다.

한편 한국의 가족구성은 핵가족의 비율이 1960년 71.5%, 80년에 76.8%, 90년에 77.0%이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핵가족의 비율이 크게 늘지 않고 정체상태에 있지만 부부세대와 단독세대의 증가를 볼 수 있다. 또 일본보다 한국이 핵가족화율이 높은 것은 6.25사변 직후 베이비붐과 전산업사회 단계에서 노동력이 원천이 되는 다산의 인구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평균세대원수가 1960년에 4.54명, 1990년에는 3.0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30년간 1.49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 변화는 미국이 산업혁명후 5.3명에서 4.3명에 이르기까지 60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더라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강렬한(drastic) 변화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이 3.05명이라는 평균세대 규모는 미국의 2.9명, 프랑스의 2.9명 등 거의 유럽이나 미국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三浦文夫, 1995: 45). 한국의 평균세대원수는 1960년에 5.7명, 80년 4.5명이었지만 1995년에는 3.34명이다. 이 평균세대원수의 감소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는 일본의 변화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35년간 약 2.36명이 줄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노인과 가족의 거주형태를 보면 일본의 경우 1992년에 실시한 국민생활기초조사에 의하면 총수 100%(15,986천명)에 단독세대가 11.7%(1,870), 노인부부 만의 세대가 27.6%(4,412), 기혼자녀와 동거가 38.7%(6,186), 무배우자 자녀와 동거가 18.4%(2,941), 기타가 3.6%(576)이다. 이미 말했듯이 노인의 단독세대와 노인부부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지만 어떻든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이 57.1%로서 구미제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한국노인의 자녀와 동거율은 1994년에 보건사회연구원이 1,958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단독세대가 17.9%, 노인부부세대가 28.0%, 자녀와 동거가 48.6%, 기타가 5.5%이다(정경희 외, 1998: 103). 그리고 노인과 동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1994년 통계청이 세대주를 대상으로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장남과 동거가 36.3%, 차남 이하와 동거가 14.9%, 딸과 동거가 3.5%, 별거가 44.9%, 기타가 0.4%이다. 특징적인 것은 학력이 낮을(초등졸)수록 자녀와의 동거율이 높고(72.9%), 장남과 동거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53.1%) 것이다(통계청, 1994: 231).

다음은 일본 총무청장관방노인대책실(總務廳長官房老人對策室)이 1991년에 실시한 세계 주요 5개국의 비교조사인데 노인과 가족의 거주형태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노인과 가족의 거주형태(%)

구분	단독세대	부부세대	미혼자녀와 동거세대	3세대
일본	5.6	33.8	14.1	31.9
한국	11.3	23.7	13.2	38.1
미국	35.1	40.8	9.5	1.3
영국	44.8	39.5	7.5	0.6
독일	38.3	37.7	6.8	3.3

자료: 総務廳長官房老人對策室, 「老人の生活と意識」, 中央法規, 1992, p.69

표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의 노인들은 3분의 1 이상이 단독세대를 형성하고 있고 80% 전후가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에서는 자녀와 동거비율이 40-50%에 달하고 있다. 또 일본과 한국에서는 배우자와의 사별 후나 신체상태가 나쁘면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구미제국에서는 처음부터 자녀와 동거하는 관습이 적어 배우자와 사별 후에는 독거세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족유형에 큰 차이가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재가개호 담당자

#### 1. 여성의 사회진출

일본도 한국과 같이 전통적인 성별분업의식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고 또 결혼과 동시에 퇴직하여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경향이 강하다. 요컨대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회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55년 이후 고도경제성장기에 여성노동력 확보의 일환으로서 보육소가 잘 정비되어 일하는 기혼여성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 내용을 체계화하면 첫째로 고도경제성장기에 사회가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 여성이 일하기 때문에 소자녀화 경향이 된다. 셋째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면(연소인구 비율의 감소) 상대적으로 노년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한 국민의 평균수명도 늘어나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도식이 성립된다. 말하자면 소자녀화 현상, 여성의 사회진출, 고령화사회의 진행,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20-30년 동안에 행해져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한다.

더욱이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1986년에 제정된 “남녀고용기회균등법”과 91년에 법률 제76호로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일하는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직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일본 총무청 통계국의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고도경제성장기인 1960년에 54.5%의 여성이 사회에 진출했고 저성장기인 1975년에 45.7%까지 그 비율이 떨어졌지만 그 후 서서히 회복하여 1990년에 50.1%, 93년에 50.3%가 되었다. 또한 1993년 현재 총고용자수에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38.6%이다(PHP研究所 編 1995: 94).

한편 한국은 여성을 둘러싼 생활환경이 가전제품의 보급, 가사서비스 산업의 신장, 식생활의 변화 등에 의해 여성에게 시간적 여유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진

출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환경은 아직도 결혼 후 퇴직강요, 임금차별, 짧은 산전·후 휴가, 빠른 정년퇴직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 비율은 경제활동인구 여성 가운데 1965년에 37.2%, 75년에 40.4%, 85년에 41.9%, 90년에 47.0%, 93년에 47.2%(통계청, 각 연도)가 사회에 진출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또 1993년 현재 여성의 사회참가율 중에 미혼이 25.2%, 기혼이 74.8%로 나타났다.

오늘날과 같이 여성의 사회참가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서 지금까지 가정에서 여성의 거의 맡아온 노인의 개호문제, 육아문제 등을 공적인 사회서비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2. 개호의 담당자

절대적 노인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인구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와상노인이나 치매성노인 등 개호를 요하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타인의 개호 또는 보호, 특히 가족에 의한 일상적인 신변개호나 개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의 진행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의해서 가족에 의한 개호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핵가족화의 진행에 의해서 가족구성원수가 줄어들면 가족이 사회환경적 위험에 대처하는 힘이 약해진다. 대가족제도하에서 가족성원이 다수이면 누군가가 상해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있거나 또는 다른 가족성원이 분담하여 타격을 분산시켜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하에서는 누군가 한 명의 상해나 질병이 가족전체의 존립 그 자체가 위협받는다. 따라서 핵가족의 사회환경적 위기대처능력은 크게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리오카와 모치즈키(森岡清美·望月嵩, 1992: 192)는 오늘날의 소가족화는 핵가족화를 가져왔다. 핵가족화로 특히 늘어난 것은 부부세대이고 이것은 특히 노년에서 늘어났다. 노인부부세대로서는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개호능력이 저하하고, 노인이 없는 짧은 부부와 자녀만의 세대로서는 노유약자(老幼弱者)의 보호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며, 오늘날 핵가족 형태로 되어 있는 가족형태에서 저하되고 있는 위기대처능력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오그번(W. F. Ogburn)은 근대공업발흥 이전의 가족은 경제·지위부여·교육·보호·종교·오락·애정이라는 일곱 가지의 기능을 수행했고 게다가 영향력과 위신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가족은 애정 이외의 여섯 가지 기능은 기업·학교·정부 등 전문적인 제도에 흡수되어 가족에게는 그 기능이 없어졌거나 남아 있더라도 약해졌다. 따라서 가족의 여섯 가지 기능은 쇠약/축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정이라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탁월해졌다(森岡清美·望月嵩, 1992: 192-3). 이와 같이 핵가족화로 된 후 가족의 기능은 많은 전문적인 제도에 흡수

되어 약해지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가정에서 노인의 주개호 담당자인 여성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서 개호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980년과 1990년에 동경도에서 실시한 “고령자생활실태조사”에서 요개호 노인의 성별로 본 주개호의 담당자(관계)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요개호노인의 성별로 본 주 개호자의 관계(%)

구분	연도	배우자	아들의 처	딸	아들 기타	합계
평균 (N=464)	1980	36.7	28.8	18.6	2.3	13.6
	1990	40.8	28.4	21.8	4.6	4.5
남자 (N=201)	1980	76.0	10.7	6.7	-	6.7
	1990	72.6	12.4	9.0	3.5	2.5
여자 (N=263)	1980	7.8	42.2	27.5	3.9	18.6
	1990	16.3	40.7	31.6	5.3	6.1

주: 기타에는 「불명」을 포함함.

자료: 三浦文夫 編, 「圖說高齡者白書」,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5, p.51

특히 남성개호 담당자는 배우자가 72.6%(1980년은 76.0%)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이 아들의 처, 딸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여성의 경우는 아들의 처가 40.7%(80년은 42.2%), 딸이 31.6%(27.5%), 배우자, 아들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상적인 개호나 개조는 대개 가족 중에서 여성의 손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①배우자를 제외하고 생산연령인구의 여성이 개호하는 것을 아들의 처와 딸로 한정하면 평균이 50.2%가 되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72.3%에 이른다. ②80년과 90년의 10년간을 비교하면 딸에 의한 개호의 비율이 신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균등상속제에 의해서 딸도 적극적으로 부모의 개호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과, 한 명의 자녀를 갖는 경향에 의해서 부모를 개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③남성의 개호는 주로 배우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④여성의 개호는 아들의 처와 딸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면 시어머니 쪽이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주된 재가개호 담당자인 여성의 개호와 관련하여 일생동안에 여성이 겪게 되는 위기적 장면을 고찰해 보면 전통적 가족에 있어서 첫 번째 위기는 혼가에의 적응, 두 번째 위기는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처럼 출산, 세 번째 위기는 남편의 부모 개호 또는 친정의 부모 개호, 네 번째 위기는 남편의 개호이다. 이와 같이 여성에게 있어서 종종 요개호의 개호는 대단한 위기적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현대화 된 오늘날에도 그 위기적 장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편 1994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에서 요개호노인의 개호 담당자는 전체적으로 배우자가 29.5%, 아들부부가 37.1%, 딸부부가 11.2%, 손자부부가 8.9%, 기타가 13.2%로 되어 있다. 또한 남성노인의 주된 개호자는 배우자가 69.9%, 아들부부가 16.8% 등으로 되고 있고, 여성 노인의 주된 개호자는 배우자가 12.8%, 아들부부가 45.5%, 딸부부가 15.4%, 손자부부가 11.5%, 기타가 14.7%이다. 한국 노인개호의 담당자에 관한 특징은 일본과 비슷하지만 손자부부에 의한 개호는 노인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45세대가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저하하는 가족의 개호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995년 6월 5일에 “개호휴업법”이 4년 후의 1999년부터 시행목표로 성립되었다. 동법은 피고용자 가족의 개호를 위해서 연속적으로 3개월간의 개호휴업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가족의 대상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로 되어 있고 가족 한 명에 대해서 1회의 개호휴업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는 이미 1994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동법의 성립으로 피고용자는 직종에 관계없이 개호휴업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가족기능을 부활 내지 강화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피고용자의 휴업이라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IV. 노인부양의식

### 1. 노인부양형태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 형태에는 경제적(물질적) 부양, 정서적(심리적) 부양, 신체(개호·서비스)적 부양 등 대개 세 가지의 형태(那須宗一·湯澤擁彥, 1970; 本村汎·高橋重宏, 1989; 김태현, 1994; 구은옥, 1989)가 있다. ①경제적 부양이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②정서적 부양이란 노인에게 고립감과 불안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인격적·정서적 욕구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는 부양을 가리킨다. ③신체적 부양이란 신체적 형편에 의해서 취사, 목욕, 세면 등 노인의 신체개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제적 부양에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할 것인지 혹은 별거하면서 부양할 것인지에 의해서 그 기능과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경제적 부양에 관해서 노친의 거주형태와 자녀와의 부양관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동거-의존형: 자녀와 동거하면서 생활비의 대부분이 원조되고 있다. 농업과 상공업의 자영업 충과 불안정 취업자에게서 잘 나타나는 형태이다.
- ② 동거-자립형: 자녀와 동거하면서 노인세대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다. 경제적 부양 을 필요로 하지 않은 중산층 이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동거는 주택사정이 조건이다.
- ③ 별거-의존형: 자녀와 별거하면서 자녀로부터 대부분의 생활비를 원조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던 부모가 퇴직, 실직 등의 이유로 점차로 경제력이 약해져 원조를 필요로 하는 형태로 부모와 자녀의 동거조건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 볼 수 있다.
- ④ 별거-자립형: 자녀와 별거하며 자녀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고용 주나 자영업자 등 소위 경제적 상층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 경우 경제적 원조가 부모로부터 자녀로 이전될 수도 있다.
- ⑤ 별거-불안정형: 자녀와 별거하며 부모가 원조를 필요로 하지만 원조되지 않는 경우이다. 자녀측에서 원조해 줄 경제력이 없거나 원조의지가 없는 경우에 나타나는 형태로 일명 기로형 (棄老型)이라고도 할 수 있다(本村汎・高橋重宏, 1989: 145-6).

지금까지 한국의 노인과 자녀와의 거주·부양형태는 ①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산업 사회가 성숙해 가는 가운데 자녀로부터 의존형에서 자립형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래는 노인의 거주형태와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상적인 것은 '동거-자립형' 또는 '근린별거-자립형'의 형태가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거주·부양형태는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을 생각하면 가족을 대신해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원조시스템이 요청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탱할 수 있는 주요 시스템은 역시 공적연금제도이다(本村汎・高橋重宏, 1989: 146-7).

1980년에 동경도가 실시한 '노인생활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약반수는 노인세대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고,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의 대부분은 노인세대가 자기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고, 별거하고 있는 자녀로부터는 거의 생활비의 보조를 받고 있지 않다(本村汎・高橋重宏, 1989: 145)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공적연금 등으로 노인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은 정서적 부양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정서적 부양이란 오랜 세월의 별리(別離)에 의해서 혈연이라는 사실이 정서적으로 지탱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생활을 같이 하거나 빈번하게 접촉함으로서 정서적 부양이 가능하다. 그리고 접촉기회가 많은 동거의 경우에는 정서적 친밀성이 생기기 쉽지만 동거와 비교하여 접촉기회가 적은 별거의 경우에는 정서적 고립성이 생기기 쉽다(本村汎・高橋重宏, 1989: 148-9). 그러나 동거가 반드시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의 정서적 대립, 즉 심리적 갈등(conflict)과 의존의 관계에 놓일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별거의 경우라도 수정직계가족 형태를 유지하면서 별거의 자녀와 정서적 친밀관계와 정서적 자립이 가능할 것이다.

거주형태와 관련해서 부모와 자식의 정서적 관계를 유형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자녀가 동거할 경우에 형성되기 쉬운 것은 ①정서적 친밀감 ②정서적 대립감 ③정서적 의존형이다. 별거할 경우에는 ④정서적 자립형 ⑤정서적 고립형이 형성되기 쉽다는 등의 형태가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가족의 정서적 부양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본연의 문제이다. 그리고 정서적부양은 가족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의미가 있고 사회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렵다. 가족에 의한 정서적 부양은 가족기능 최후의 부양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本村汎・高橋重宏, 1989: 148-9). 그러나 가족을 대신해서 지역사회가 노인의 정서적 부양을 담당하는 노인학교, 노인클럽 등이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노인정’이라고 하는 광대한 지역 네트워크가 있다.

신체적 부양에는 재가노인과 치매성노인의 개호 등의 문제인데 이미 논란대로 가정에서 신체적 부양의 담당자는 거의가 여성이다. 그러나 여성과 직업, 자립의식의 고양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 직업과 가사노동, 육아, 더욱이 중증 요개호자의 개호까지 여성의 손으로 행하여진다는 것은 여성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 여성의 부담 편중문제로서 앞으로 남녀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오늘날 일본은 독거노인세대와 노인부부세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요개호 노인의 개호를 사회화해서 사회적 서비스로 대체 내지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경향에 있다. 그리고 동거하는 자녀가 있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개호기간의 장기화, 질병의 만성화 등에 의해서 심신의 피로와 장기간 구속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증노인의 개호에 대하여 가족이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가 금후의 과제이다.

## 2.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일본과 한국에서 노인과 가족이 동거하는 비율은 어떤 조사에서도 대개 45-6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인의 부양의식에 관한 조사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988년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부양책임에 관한 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부양한다’·‘부모가 경제력이 없으면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93.6%를 차지하고 있고, 결혼 후 부모부양의식에 관해서도 ‘반드시 부모를 부양한다’·‘배우자와 상담해서 정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96.6%였다(허훈, 1988: 90). 한편 한국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부모의 경우 독립세대보다 동거세대를 형성하여 자녀로부터 부양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일본에서 개호 담당자에 관한 총무청장관관방 노인대책실이 1981년, 87년, 92년에 각각 실시한 '노후의 생활과 개호에 관한 조사'이다.

<표 4> 부모가 와상노인이 되었을 경우 개호해야 할 사람

조사 I: 전국의 60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

구분	설수(명)	주로 배우자·자녀 등 등의 가족·친족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부족부분은 복지시책	주로 헬프제도 등 복지시책	노인홈 등에 입소	모르겠다
1981	1413	79.7%	13.0%	1.9%	2.0%	3.4%
1987	1452	73.3	17.1	1.7	4.9	2.9
1992	1428	67.2	22.2	2.8	4.4	3.4

조사 II: 전국의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

1981	1259	72.6	24.1	0.9	1.0	1.4
1987	1313	62.2	32.2	1.7	2.0	1.9
1992	1235	55.7	37.5	2.3	2.8	1.7

자료: 総務廳長官官房老人對策室, 「老後の生活と介護に関する調査」 참고

부모가 와상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누가 개호해야 할 것인가를 보면 1992년의 조사에서는 '가족, 친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율이 60-70세대에서는 67.2%, 30-50세대에서는 55.7%로 가장 높고, '가족 등을 중심으로 하고 부족부분은 복지시책'이 각각 22.2%과 37.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81년과 1987년을 비교하면 감소경향에 있지만 여전히 개호는 가족중심주의가 뿐리 깊게 남아 있다. 또 가족에 의한 개호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 부족부분을 복지시책으로 해야한다는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정책이 가족개호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충실히 기울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한국통계청이 실시한 '노부모부양책임에 대한 태도'에 관한 사회통계조사의 결과이다.

<표 5> 한국의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구분	장남	아들전원	딸	자녀전원	자립	사회 및 기타	합계
1979	30.6%	22.2	0.6	6.4	36.6	3.6	100
1983	22.1	21.7	0.8	27.1	20.5	7.8	100
1988	25.2	17.8	0.5	35.8	15.8	5.0	100
1991	18.3	13.8	0.4	46.2	15.4	5.9	100

주: 부양책임은 경제적 측면(생계책임)의 의미이고, 조사대상은 전국민이다.

자료: 대한통계협회, 「한국의 사회지표」, 각 연도 참고

이) 조사는 노후 생계의 책임에 관한 주관적 태도로 부모의 존재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노후의

경제적 부양책임을 물은 조사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장남'의 부양책임이 1979년 30.6%에서 94년에는 19.6%까지 줄고 있고, '자녀전원'이 79년 6.4%가 91년에는 46.2%가 되어 12년간 39.8%나 늘어난 것이다.

전체로서 자녀의 부양책임이 1979년에 59.8%였는데 91년은 78.7%에 달하고 있고, 그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적인 특징으로 딸의 부양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딸은 결혼과 동시에 출가외인으로서 다른 가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유교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의식으로는 아직도 사회 및 국가에 노인부양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는 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유교사상의 영향과 아직도 복지수급의식이 약하고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음 등에 기인할 것이다.

거주환경을 비롯하여 사회적 상황이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을 점점 더 곤란하게 하고 있고, 또 산업화와 동시에 구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앞으로는 노인부양을 가족의 사적기능에 의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것을 국가책임으로 전환할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실제로 부모의 생계부양(경제적 부양)에 관해서 1994년에 한국의 통계청이 세대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생계지원이 62.1%(중, 장남이 33.1%, 차남 이하가 7.6%, 모든 아들이 8.7%, 딸이 1.6%, 자녀전원이 11.1%)이고, 스스로 해결이 37.6%, 기타가 0.3%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로부터 생계지원율이 높고(83.0%), 또한 장남으로부터 특히 지원율이 높다(50.6%). 대졸 이상의 경우는 49.6%로 노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통계청, 1991: 231).

## V. 결 론

사회복지와 가족의 관계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특히 재가복지의 추진과 진행에서는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가족의 관계, 특히 노인부양과 가족의 관계에 관해서 조명해 보았다. 본 연구를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로, 전통적 가부장제하에서의 노인은 장남이 가계를 계승함과 동시에 노인을 부양하기 때문에 노인부양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핵가족화에 의해서 노인부양기능이 약화 내지 쇠퇴하여 노인부양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해 왔다. 오늘날에는 가족형태가 크게 변화하여 독거와 노인부부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인세대가 와상이

나 치매노인 등 중증 요개호계층을 형성한다. 특히 지금까지 개호의 주된 담당자였던 며느리, 처, 딸, 즉 여성이 사회참가의 증가로 개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더욱이 노인부양의식도 산업사회의 발달과 사상적으로 구미에 영향받아 약해져 가는 가운데 앞으로 노인개호문제는 공적지원에 의한 사회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로, 농경사회에서는 생산단위가 가족이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생산단위가 개인으로 변한다. 따라서 가족기능이 저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가족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정서적 부양기능에 불과한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책적으로 가족에 의한 사적기능으로 노인부양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셋째로, 이러한 모순 가운데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노인단독세대와 노인부부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세대가 허약, 와상, 치매 등의 중증 요개호상태로 전락하면 가족이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한국에서 노인의 경제적 보장뿐만 아니라 신체적 부양도 공적서비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형 복지사회에서도 유교사회인 한국에서도 노인문제의 해결을 가족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裏面)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복지확충시기에 확대된 복지의 축소 일환으로서 가족기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노인을 위한 복지기반이 취약하고 거의 모든 복지기능을 가족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노인복지문제를 예측해 보면 지금부터 노인문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학대·방기(虐待·放棄)되어 큰 사회문제가 된 후에 대책을 서두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구은옥,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태현, 「노년학」, 교문사, 1994.
- 박재간, 「21세기 노인문제와 사적부양기능」,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No.5, 1985.
-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이광규, 「동 아시아사회의 가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현대사회와 가족」, 제7회 복지사회심포지움, 1986.
- 최재식, 「전통가족의 특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현대사회와 가족」, 제7회 복지사회심포지움, 1986.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대한통계협회, 1991.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신한국의 사회복지정책」, 1994
- 허훈, 「한국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No.8, 1988.
- 岡本祐三, 「醫療と福祉の新時代」, 日本評論社, 1994.
- 北川隆吉 監修, 「現代社會學辭典」, 有信堂高文社, 1984.
- 總務廳長官官房老人對策室, 「老人の生活と意識」, 中央法規, 1992.
- 仲村優一 編, 「現代社會福祉事典」,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0.
- 那須宗一・湯澤擁彥 編, 「老人扶養の研究」, 城内出版株式會社, 1970.
- PHP研究所 編, 「戰後50年日本のあゆみ」, PHP研究所, 1995.
- 布施晶子・玉水俊哲, 「現代の家族」, 青木書店, 1982.
- 布施晶子・玉水俊哲・庄司洋子, 「現代家族のルネサンス」, 青木書店, 1992.
- 本村汎・高橋重宏 編, 「家族と福祉の未來」,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89.
- 三浦文夫 編, 「圖說高齡者白書」,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5.
- 森岡清美・望月嵩, 「新しい家族社會學」, 培風館, 1992.